

#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건설부령 제181호  
1976. 10. 12  
건설부장관

제 1 조 제 1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동당 연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축사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표의 (1)난에 기재하는 해당도서(입면도를 제외한다)에 한한다.

제 22 조 본문중 "기준대수" 다음에 "(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,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)"를 삽입하고,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② 5층 이하의 층에 있는 거실로서 그 직상에 6층이상의 층이없는 부분의 거실면적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실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별지 제 6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 6 호 서식]

준공(동별준공)신고서									
건 축 주	①성 명	②주민등록번호							
	③주 소	전화							
설 계 자	④성 명	⑤자 격 ( )급건축사등록 제 호							
	⑥주 소 및 사무소명	전화							
공사감리자	⑦성 명	⑧자 격 ( )급건축사등록 제 호							
	⑨주 소 및 사무소명	전화							
공사시공자	⑩성명또는 상호	⑪자 격 건설업면허 제 호							
	⑫주 소	전화							
⑬대 지 위 치									
⑭허 가 번 호		⑮허 가 일 자		년 월 일					
⑯착 공 년 월 일		년 월 일		⑰준 공 일 자		년 월 일			
⑱지 역		⑲지 구							
⑳대 지 면 적		㉑층 수							
㉒용 도		㉓구 조							
㉔최 고 높 이		㉕처 마 높 이							
신 청	㉖명 칭	㉗신 청 부 분		㉘신 청 이 외 부 분		㉙합 계			
	㉚연 면 적								
건 축	㉛건 축 면 적								
	㉜공 사 중 별	㉝주 거 용 인 경 우 세 대 수							
물	㉞구 조	㉟의 비 재 료							
	㊱지 붓 재 료	㊲처 마 재 료							
동	바 닷 면 적	㊳구 분	층 별	층	층	층	층	계 ( )층	
		㊴신 청 부 분							
		㊵신 청 이 외 부 분							
개	요	㊶합 계							
		㊷용 도							
㊸거 실 의 내 장 재 료 의 종 류									

제 호	㉔ 통로의 내 장 재 료 의 종 류					
	㉕ 거 실 의 반 자 높 이					
호	㉖ 최 대 방 화 구 획 의 면 적					
	㉗ 피 난 계 단 의 종 류					
호	㉘ 건 축 물 출 입 구 로 부 터 도 로 에 이 르 는 폭					
	㉙ 최 고 높 이					
건축설비	㉚ 변 소	비 상 용 대 수				
	㉛ 냉 · 난 방	승 강 기	㉜ 승 강 장 의 면 적			
㉝ 비 상 용 조 명 장 치		㉞ 기 타				
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월 일						
(시장·군수) 귀하		신고인			㉟	
(첨부)						
1. 액상 폐기물 정화조 검사필증 사본 (법 제20조 제 2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)						
2.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(법 제53조의 5 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)						

7803-1-4A(1)  
1973. 9. 6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 50g/m<sup>2</sup>)